

청주지방법원 2017. 8. 10 선고 2017가단586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8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총북 청주시 흥덕구 D대 12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21㎡ 지상에 있는 흙블럭조 슬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

판사김한성

별지